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
(관악구 신림동 110-10외 1필지)

의 안 번 호	2027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을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공공임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“역세권 활성화사업”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계		38,350	-	38,350	100	-
주거지역	준주거지역	38,350	감)1,779	36,571	95.4	
상업지역	근린상업지역	-	증)1,779	1,779	4.6	

○ 결정(변경) 사유서

대상지 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비 고
	기 정	변 경		
관악구 신림동 110-10외 1필지	준주거지역	근린 상업지역	1,779	▪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

3. 추진경위

○ ’19. 6. :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발표

○ ’19. 9. :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(5개소)

○ ’19. 9.~’20. 4. : 시범사업 TF회의(4회), 자문단 자문(2회)

○ ’20. 7. :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(관악구)

○ ’20. 8.24. : 구의회 의견청취

○ ’20. 9.17. :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(관악구)

○ ’20. 9.29.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요청(구→시)

4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안) 주민의견 청취 등

가. 공람기간 : 2020. 7. 9. ~ 7. 23.

나. 주민 제출의견 : 없음

다. 관계부서 의견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
같은 법 시행령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송인희 (☎ 2133-8451)

붙임 1.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도 1부.

붙임	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도

□ 위치도

□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도

○ 기 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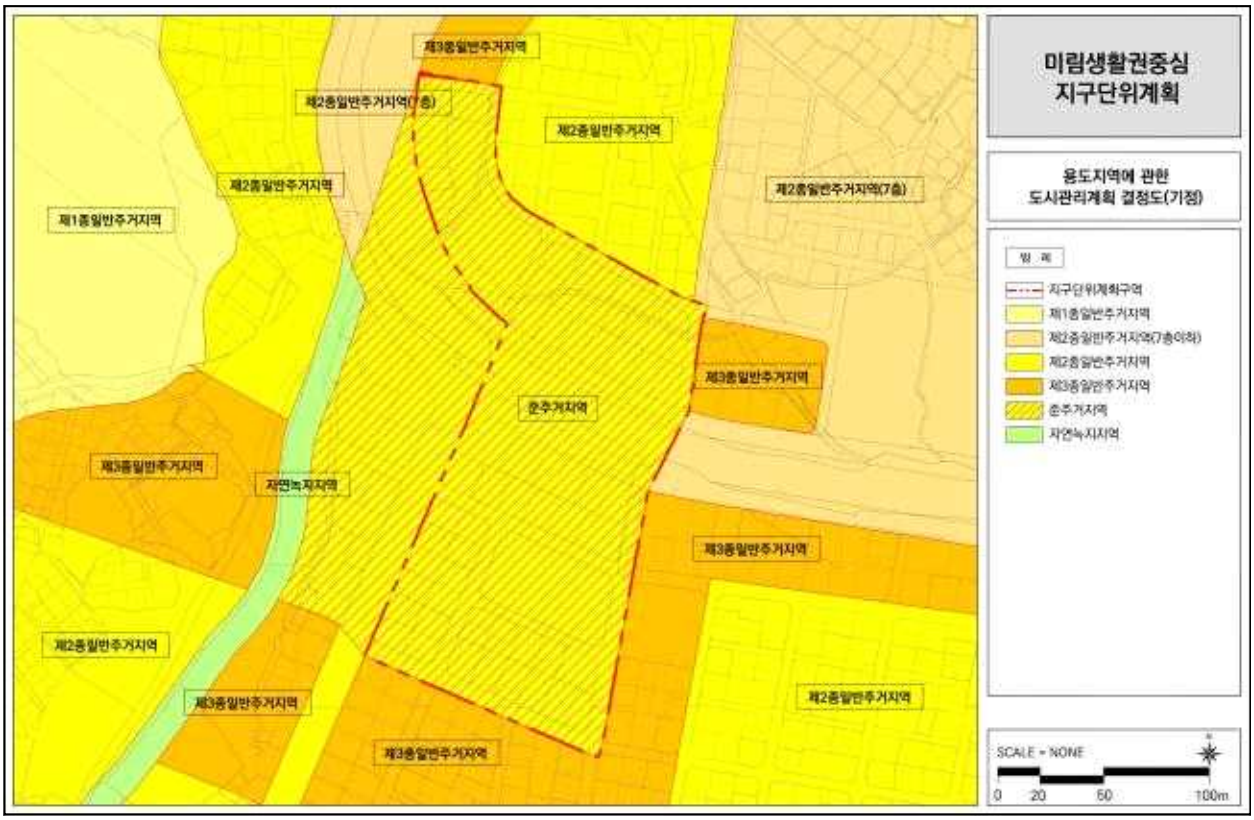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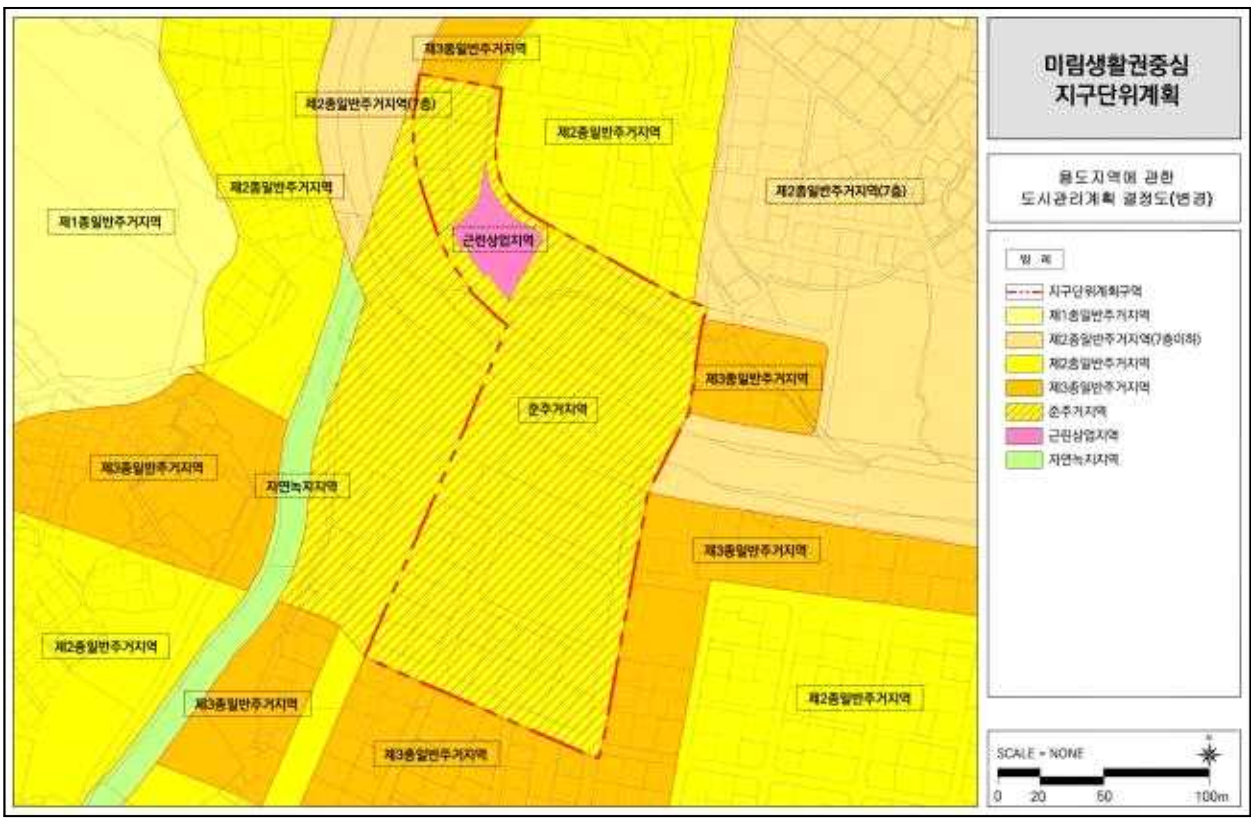
○ 변 경